

 재정경제부	보도자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
	보도일시	2007.11.5(월) 15:00 부터	
생 산 일	2007.11.5(월)	생산부서	금융정책국 중소기업금융과
담당과장	우상현 과장(2150-9650)	담 당 자	이석란 사무관(2150-9653)

제목: 제3차 「대부업 정책협의회」 개최

□ 정부는 2007.11.5(월) 15: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3차 「대부업 정책협의회」를 개최하였음

* 경제부총리(주재), 법무부장관, 행자부 제2차관, 금감위부위원장, 공정위 부위원장 (☞참고1)

※ 동 협의회는 '06.12.19 대부업 관리·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성·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, 12.27일 제1차 대부업 정책협의회, '07.6.5일 제2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

○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대부업 제도개선, ②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, ③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,

-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시장동향을 조사해 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마련

《주요 논의결과》

① (대부업 관리·감독지침) 지자체의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및 대부업체의 모범기준(Best Practice) 역할을 할 지침을 제정

○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지침안을 확정하여, 11월중 지자체 등에 배포 계획

○ 향후, 지침안은 운영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, 추가적인 법령 해석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·보완

② (상시모니터링) '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*를 구축

* 행자부·지자체가 정기적(대형대부업체는 분기, 중소형업체나 개인은 반기)으로 대부업 DB를 구축하고 금감위가 자료의 검토·분석

-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중('07.10~11)
 -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2월중 결과 발표
-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·금감위(원)·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**검찰과 경찰(불법사금융 단속)·국세청(세원관리)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**
 -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, 대부업자에 대한 **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**를 강화해나갈 계획
- **열린정부 홈페이지(www.open.go.kr)**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

③ (상시단속체제)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·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

- 불법사금융에 대한 **상시단속체제**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
- 내년에도 필요시 **특별단속**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

④ (홍보강화) 이자제한 내용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* 이자제한법·대부업법 관련 홍보를 강화

*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(금감원, 10.8~23, 865명) 결과 이자제한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44.5%, 이자제한법 시행이후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이용자는 13.1%

- **서민금융안내 책자, 이자제한법 해설책자** 등을 제작하여 11월중 지자체,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

○ 특히,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제를 강화할 예정(☞참고2)

-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, 법률내용과 구조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

⑤ (서민금융공급 확대)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,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 제공

○ 서민맞춤대출서비스(이지론), 대출 환승론* 등 기존 서민금융 대출제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

* 대부업체 이용자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(연이율 35%~48%)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상품
(실적 : 5.21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32건, 28.7억원을 대출)

○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*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**하여 서민들의 급전수요에 따른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

*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('07.2학기부터)

** 07.10월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(최저생계비 130% → 150%, 1만가구 추가)하는 긴급복지법시행령 개정중(08.1월 시행)

○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계층에게는 다양한 대안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제고

- 내년 1/4분기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* 지원

* 창업·취업지원 대출, 교육·의료비 지원 대출, 신용회복 지원 대출,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

-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교육 등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에 특화하는 재단으로 설립 추진중(11월 설립 예정)

- 11월말 이후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운영재단이 설립되면 영세서민을 위한 소액보험지원 가능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《참고1》

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

대부업정책협의회

경제부총리(의장)
 법무부장관·행자부장관·공정위원장
 금감위원장·국무조정실장

실무협의회

재경부 차관보(의장)
 법무부, 행자부, 공정위, 금감위, 국조실,
 경찰청, 국세청

**관계기관
 협의회**

시·도 및 지방
 경찰·공정위
 ·국세청·금감원

**대부업 관리·감독 지침
 수립 등 제도개선 T/F
 (재경부 주관)**

- 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 총괄
- ②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(금감위 협조)
- ③ 사금융 관련 교육·홍보 (금감위 협조)
- ④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추진
- ⑤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(금감위)
- ⑥ 관련부처 감독부서 인력 확충 방안

**실태파악 및
 상시관리체계 T/F
 (행자부·금감위 공동 주관)**

- ①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
- ②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·감독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수립
- ③ 대부업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- ④ 시·도 등의 대부업 관리·감독 인력 확충 및 교육
- ⑤ 시·도별 대부업 관리·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구성·운영

**불법사금융
 단속 T/F*
 (법무부 주관)**

- 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
 - ② 상시단속체계 구축
 - ③ 신고 인센티브 등 단속관련 제도개선
 - ④ 사채업자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제도개선
- * 국조실은 필요시 단속관련 부처간 조정 등 협조

《참고2》

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(법무부)

1. 현 황

□ 이자제한법 시행(6.30)으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,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로 자력으로 법률퉈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

⇒ 저소득층 법률퉈구제를 위하여 법률퉈구조공단을 통한 법률퉈구조제도를 적극 활용

2. 법률퉈구조공단의 이자제한법 관련 법률퉈구조

【 법률퉈구조대상자(법률퉈구조사건처리규칙) 】
▶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/농·어민/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/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/영세담배소매인/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

【주요 법률퉈상담 사례】
▶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
▶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나 원본에 총당이 가능함을 설명
▶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약정한 이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,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중 초과부분은 무효임을 설명
▶ 이자제한법은 인가·허가·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

3. 향후 추진계획

□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지속적 추진

-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등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, 지속적으로 추진

□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홍보 강화('07.10.~11.)

- 공단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, 국정홍보처 전광판 활용 홍보, 안내 리플렛(10만부) 제작·배포,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에 관련 서식 게시
- 유관기관과 협조,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구조 홍보 강화